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2년 11월 8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 
교육부장관 이주호

●대통령령 제32980호

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

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대학·교육대학 및 전문대학”을 “대학 및 교육대학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대학원에 학과를, 전문대학에 학과를”을 “대학원에 학과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교육대학 및 전문대학”을 “교육대학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 중 “제9조, 제13조 및 제14조”를 “제9조 및 제13조”로 한다.

제16조제9항 중 “한국복지대학교”를 “한경국립대학교”로 한다.

별표 1 제1호의 학교명란 중 “한경대학교”를 “한경국립대학교”로 하고,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“한경대학교”를 “한경국립대학교”로 하며,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표 제5호의 서울맹학교의 과정란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”로,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”로,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별표 6 중 한경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한경국립대학교	7
---------	---

별표 7의 제목 중 “(제9조제2항,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관련)”을 “(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8 중 한경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한경국립대학교	2
---------	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교 명칭이 변경되는 한경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한경국립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에 한경대학교에 입학한 허가받은 사람은 한경국립대학교에 입학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경국립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이 영 시행 당시 한경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한경국립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.

제3조(폐지되는 한국복지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복지대학교에 재적 중 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한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28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 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경국립 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 대학이나 한경국립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④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복지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한경국립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한경대학교”를 “한경국립대학교”로 한다.

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64호를 삭제한다.

#### 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를 한경대학교로 통합하여 그 명칭을 한경국립대학교로 바꾸고, 한경국립대학교에 설치하는 과·담당관 및 행정실의 규모를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